

000-000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

전화번호)

팩스)

○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계좌(가상계좌) 또는 인터넷지기로 납부 가능합니다. 자세한 납부방법은 뒷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년 월 일 기한인 변제금 납부통지서가 들어 있습니다.
(납기 후 사용불가)

바코드

주 소 :

받는 사람 :

00000

가상계좌(납부 전용계좌로 입금하는 경우)		
○○은행	○○○-○○○○○○-○○-○○○	납부기한 내 이 통지서에 따른 납부금액 입금만을 위한 전용계좌입니다. (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)
○○은행	○○○-○○○○○○-○○-○○○	

변제금 납부통지서

- 사업장명: 대표자명: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- 이 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변제금 합산액(납부할 금액): 원
- 납부기한: 년 월 일까지
-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8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3에 따라 귀하(귀사)가 공단에 내야 할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0000년 00월 00일까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(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등)에 직접 방문하거나 뒷면에 안내된 전용계좌 입금 등의 방식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 납부기한까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변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/15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,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 지날 때마다 미납된 변제금의 1/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. 또한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후 귀하(귀사)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통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, 근로복지공단(지사)에서 납부통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.
- 이 납부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만일 이 납부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전액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납부통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 납부통지서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거나 통지서 재발급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(전화:) 또는 대표전화 1588-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변제금 납부통지 내역			변제금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(납부자용)		변제금 납부영수증서 (수납기관용)		
년도	구분	분기	금액	바코드	전자납부번호		
00	0000000000	00	0000000000원		0000-0000-00-0-0-0000000		
00	0000000000	00	0000000000원	보험관리번호:	소관: 고용노동부		
① 이번 납부통지 금액(납부할 금액): 원					회계연도:		
년도	구분	분기	금액	소관: 고용노동부	회계연도:		
00	0000000000	00	0000000000원		회계(기금): 임금채권보장		
00	0000000000	00	0000000000원	기금징수기관: 근로복지공단	기금징수기관: 근로복지공단		
② 이번 납부통지 금액(①) 외의 납부기한 경과 금액: 원					사업장명:		
* 이번 납부통지 금액 외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 금액(②)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담당자 전화번호 또는 대표전화(1588-0075)로 문의하여 원금 및 연체금 합산액을 확인하신 후 별도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수입징수관계자	납부할 금액	사업주명:		
년 월 일					수입징수관계자		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직인			납부할 금액		납부할 금액		
			년 월 일		년 월 일		
			위 금액을 영수합니다.		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담당자:			전화번호:		담당자:		
발행일(발송일):			수납인		전화번호:		
					발행일(발송일):		
					수납인		

납부방법 안내

직접 방문 납부

-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(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등)에 방문
- 금융기관 창구에 직접 납부
- 현금자동입출금기(CD/ATM기) 납부
- ※ '공과금 납부창'에 접속하여 전자 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
- 공과금수납기 납부
- ※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

전용계좌(가상계좌) 납부

- 통지서 앞쪽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금액 입금
- ※ 타행 입금시 수수료 별도
- 이용가능시간: 평일 07:00~23:00
- ※ 예약이체, 대량이체 불가

인터넷지로 납부

- 「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」로 접속하여 납부
- ※ '기금 및 기타국고'를 선택하여 전자납부번호 입력 · 조회 후 납부
- 이용가능시간: 평일 07:30~23:30